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관련 PQ신인도 평가제도 개선

대한설비건설협회 'PQ신인도에 재해율 반영제도 개선 탄원서' 제출 등 노력에 힘입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재해율 건수에 따른 감점제가 폐지되고 원도급사의 산업재해 은폐와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산재은폐)하여 벌금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신설됐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PQ제도 변경안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가 지난 1년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2005. 6. 17)하고, 이 탄원서에 「건설산업이 여타산업에 비해 재해발생율이 높다고 인식되어 PQ신인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지만 당초 목적인 재해율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산재은폐 및 재해근로자 보상처리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비용부담 등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결과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먼저 재해율 불량에 따른 감점 폐지로 PQ신인도 평가에 재해율 반영점수가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평균재해율이 0.25배 이하이면 PQ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0.40배 이하 +1.7 △0.55배 이하 +1.3 △0.70배 이하 +1.0 △0.85배 이하 +0.7 △1.00배 이하 +0.3 △1.00배 초과는 0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간(당해년도 50%, 전년도 30%, 전전년도 20%)으로 확대된다.

또한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 신설로 산재 은폐가 적발돼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건당 0.2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받는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PQ신인도 반영기준은 완화돼 사용기준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때에만 건당 0.5점씩 감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

